

캠프 미커와 파크 지역구는 (“지역구”) 소노마 카운티의 기관으로 200개 이상 서비스 연결시설에 수도를 공급하는 도시수도 혹은 커뮤니티 수도이며, 지역구는 2020년 2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원법안 998호에 따라서 관리받는다. 이에 지역구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지역구법 4.0항을 전체적으로 수정한다.

체납 계정:

체납 계정이란 미납요금을 정산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이십팔(28)일이 지난 이후 영업마감시간까지 미납인 채인 서비스요금이 있는 계정으로 이에 정의한다. (납부연기나 납부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별도납부약정을 설정하지 않고, 만기가 지난 고지서에 항의나 항소를 제출하지 않음) 체납 계정의 수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소액 잔고 계정: 체납 계정에 20달러 미만의 잔고는 연체료나 추가 수금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청구기간으로 이월되고 합산된다. 지역구의 재량으로 조치한다.
2. 별도납부약정: 정상납부기한 내에 서비스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고객은 연체료나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한다. 지역구는 요청에 관한 상황을 모두 참작하여 납부약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다음 사항으로 지역구가 별도납부약정 요청을 허가하게 되는 근거를 성립한다:

- a. 주치의사의 증서 :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 사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거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치의사가 (일반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주치의 클리닉, 병원, 외래환자 클리닉) 증명한 증서
- b.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 무능력 : 지역구의 정상청구주기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고객이 증명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보조, 메디칼, 보충보장소득/주정부 보조금프로그램,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인 경우나 혹은 고객은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보다 적다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주거용 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 c. 고객은 모든 체납요금에 대해 본 방침과 일치하는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약정, 혹은 납부연기나 납부인하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고, 서명한 별도납부약정 요청서를 제공한다.

고객은 서비스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려면 지역구에 (707) 874-9246 으로 연락한다. 별도납부약정 요청은 문서로 지역구 주소인 5240 Bohemian Hwy, Camp Meeker, CA 으로 제출한다.

별도납부약정은 다음과 같은 편의사항이 있다:

- a. 미납잔액의 할부상환납부.
- b. 별도납부약정 참여.
- c. 다른 요율 납부자에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미납잔액용으로 일부나 전체 인하
- d. 임기납부연기

별도납부약정은 문서로 하며 고객과 지역구 직원이 서명해야 한다. 지역구는 고객이 이행하는 상기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방법의 범위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제안한 납부방법으로 12개월 내에 미납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하면 더 긴 기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긴 상환기한을 허가할 수 있다. 고객은 별도납부약정이 체결된 동안 후속 미납요금에 대하여 추가로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지 못한다. 별도납부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단통지서가 발급되며,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오(5)일 전에 발급될 것이다.

3. 추가 통지서: 편의를 위하여, 지역구는 계정이 체납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성실한 노력을 하며,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약 60일 이후부터 수금조치가 시작된다. 통보 방법은 고객이 선정하는 통보 선호(문자, 전화, 이메일)에 따르게 된다. 통보 방법을 고르지 않은 고객은 문고리, 전화, 이메일로 통보받는다. 고객이 최신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는 전화나 이메일 연락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 중단 통지서: 지역구는 고객의 요금납부가 최소한 60일 동안 체납될 때까지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지역구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문서로 연락한다. 중단 통지서는 계정에 나온 우편주소로 발송하게 된다. 우편주소와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주소가 다른 경우, 두번째 통지서가 서비스 주소로 발송되고 "입주자" 앞으로 보내진다. 중단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만기된 요금
-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나 납부약정을 해야하는 날짜

- 할부상환약정에 신청하는 절차 설명
- 고지서를 분쟁하거나 항소하는 절차 설명
- 지역구의 수금 방침에 관한 지역구 전화번호와 웹링크

a.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는 주거지의 주거용 세입자/입주자 통지서 :

집주인에게 개별 계량기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수도서비스 계정이 체납인 경우 수도서비스를 차단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정부는 세입자에게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통지서는 그 주소의 후속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한 세입자/입주자가 체납 계정에 만기된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고세입자/입주자에게 알려준다. 체납 계정의 금액을 면제 받으려면, 세입자/입주자가 임대계약서나 월세 증명의 방식으로 임대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b. 매스터 계량기로 공급받는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입주자 통지서 : 지역구는 수도서비스가 꺼지기 최소한 10일 전에 수도서비스가 체납이고 중단된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서로 거주지의 문에 걸어두고 입주자에게 적절히 성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세입자/입주자가 매스터 계량기로 공급받는 주소의 수도 서비스에 대한 후속 요금의 경제적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한, 체납 계정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청구 받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통지서로 알리게 된다. 세입자/입주자 중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혹은 서비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입주자의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 지역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입주자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것이다.

5. 중단 마감일: 체납된 수도서비스 요금과 관련비용은 중단 통지서에 나온 날짜에 저녁5시까지 지역구에 접수해야 한다.
6.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 지역구는 계량기를 끄거나 어떤 경우는 잠그고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고객은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7영업일 전에 중단 통지서를 통지받게 된다.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꺼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시스템의 서비스를 재설정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부과된다. 시초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요금 납부를 받지 못하면 계량기는 꺼진 위치에서 잠기게 되며 중단 비용이 부과된다.

7. 서비스 재설정: 미납으로 인하여 중단되서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고객은 재설정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는 실행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겠지만, 서비스 종료에 원인이 된 만기된 요금과 체납료를 납부받은 후 최소한 정상 영업일 마감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복구할 것이다. 지역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역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켜는 수도서비스에 대해 벌금이나 추가 요금,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 복구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의 책임이다. 서비스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까지 제공하게 된다.

8. 영업시간 이후 서비스 재설정: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 공휴일에 저녁 5시 이후 복구된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 서비스 재설정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영업시간 이후 서비스 재설정 요금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비용을 수락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역구의 다음 영업일 정오까지 해당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부서에 연락할 것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이후에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영업시간 이후 서비스 재설정 요금은 만기 계정의 일반 재설정 비용과 연체료에 추가적이다. 서비스 요청에 응답한 지역구 직원은 요금을 수금할 것을 허가 받지 않지만 고객에게 다음 영업일 정오까지 청구부서에 연락할 것을 알려주게 된다. 차단되고 잠근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 재설정되지 못한다.

서비스가 신규계정이고 지역구는 서비스를 설정하는 요청을 받지 못하여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아직 서비스를 설정하지 않아서 서비스가 정상 영업시간 이후에 복구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해 청구부서에 연락할 것을 동의해야 하며, 영업시간 이후 재설정은 면제할 것이다. 상기 파악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서비스는 가능한 빠르게 복구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청구부서에 연락할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시간 이후 재설정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9. 부도수표 처리 통보: 수도 요금이나 기타 요금의 납입금으로 부도 수표를 받게 되면, 지역구가 계정을 미납으로 처리한다. 지역구는 부도 수표를 발급한 고객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적절하고 성실한 노력을 한다. 부도수표로 인한 48시간 서비스 종료 통지서가 발급될 것이다. 통지방법은 고객이 선택한 통지번호(문자, 전화, 이메일)를 따르게 된다. 통지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고객은 전화로 통보하게 된다. 지역구가 문자,

전화, 이메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거주지를 찾아가서 서비스 종료 통지서를 두고 오는 성실한 노력을 하게 된다.

부도수표 금액과 부도수표 요금을 종료통지서에 나온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부도수표 금액을 배상하고 부도수표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전부 현금이나 신용카드, 보증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0. 과거 중단된 서비스에 관한 부도 수표: 고객이 과거에 미납으로 중단된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요금납부금으로 부도 수표를 발급하고 지역구가 서비스를 복구하게 된 경우, 지역구가 추가 통지서를 주지 않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중단하게 된 수도요금 납부로 처리된 유통불가능 수표인 경우 48시간 서비스 종료 통지서를 주지 않게 된다.

미납으로 꺼진 서비스를 복구하는 납부금으로 유통불가능 수표를 발급한 고객은 부도수표 납부 날짜로부터 12개월 기간 동안 향후 서비스 중단을 복구하기 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보증 자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11. 분쟁된 고지서: 고객이 고지서를 분쟁하고 이사회에 항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가 대기 중이면 지역구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게 된다.